

알기 쉽고 편리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ESCROW)



알기 쉽고 편리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ESCROW)



ESCROW



Contents

| | |
|--------------------------|----|
| 1.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4 |
| 가. 제도 개요 | |
| 나. 법적 근거 | |
|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기관 | 5 |
| 가. 지정 현황 | |
| 나. 법적 근거 | |
| 다. 임치물 보관설비 현황 | |
| 3. 기술자료 임치제도 필요성 | 7 |
| 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 |
| 나.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보장 | |
| 다. 개발기술 입증/보관 | |
| 4. 기술자료 임치 대상물 | 9 |
| 가. 기술자료 임치물 | |
| 나. 법적 근거 | |
| 5. 기술자료 임치계약 유형 및 서비스 내용 | 10 |
| 가. 계약유형 | |
| 나. 서비스 유형 | |
| 다. 이용절차 | |
| 6.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현황 | 14 |
| 가. 국내 현황 | |
| 나. 해외 현황 | |
| 7.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례 | 16 |
| 8.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 18 |

1.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가. 제도 개요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해두고,
-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 멸실, 개발사실 입증 등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교부하여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대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국내기업- 해외기업간 거래관계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 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업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③ 정부는 수치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가. 지정 현황

-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임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치물 전용보관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를 갖춘 것
 - 나.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을 갖춘 것
 -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을 갖춘 것

다. 임치물 보관설비 현황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에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치물 보관시스템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독립된 설비시스템 | - 외부 차단 독립공간에 임치보관 설비 구축 - 철제 이중 외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완전 차단 | |
|  최적의 보관시스템 | - 향온·항습시스템 가동 - 먼지·불순물 제거 시스템 가동 - 화재 감지시스템 및 자동 진화시스템 가동 | 내·외부 인력에 의해 24시간 통제 |
|  철저한 통제시스템 | -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통제 - 임치실 3중 잠금장치 - 24시간 CCTV 감시시스템 - 움직임 감지센터 | |



3. 기술자료 임치제도 필요성



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기술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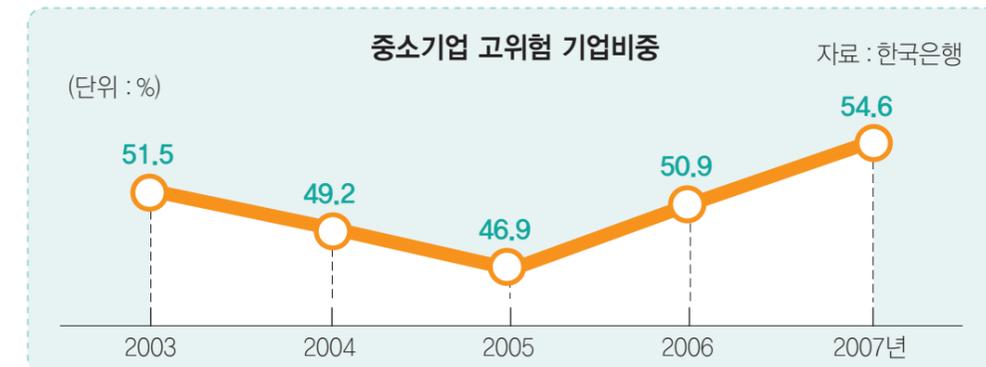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30%가 납품거래시 핵심기술 유출 경험 ('07. 3 중앙회 조사)

나.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보장

-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사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위기의 중소기업, 54%가 부도위험



다. 개발기술 입증/ 보관

-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개발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재단에 임치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사실 및 해당 기술의 보유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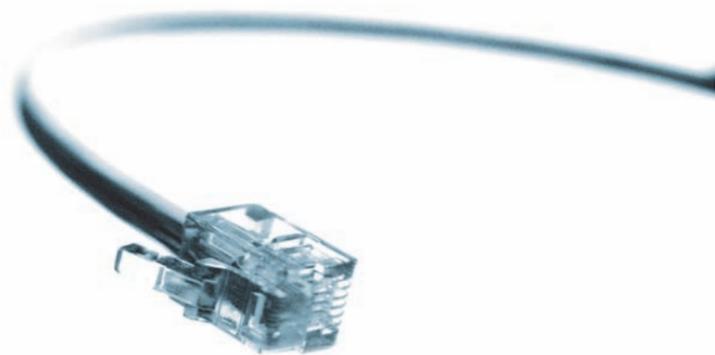
☞ A사의 연구소에서 국책과제를 준비 중이었던 연구원 3명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 후 경쟁회사로 입사하였으며, 그 후 연구원 3명은 A사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국책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그 후 A사는 해당 기술을 되찾으려고 하였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경쟁회사에게 기술을 탈취당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유출사례집 ('07. 9 중소기업청 발간)

- 또한 천재지변, 담당자의 실수, 컴퓨터 오류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0%는 대기업과 기술거래 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 ('07.3,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조사대상 대·중소기업의 84.4%가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07.8,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 기술자료 임치 대상물



가. 기술자료 임치물

기술상 정보

생산·제조방법/시설·제품 설계도
물질 배합방법/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관리정보 (원가, 재무, 인사 등)
고객 데이터/매뉴얼 등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나.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알아봅시다

대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기업은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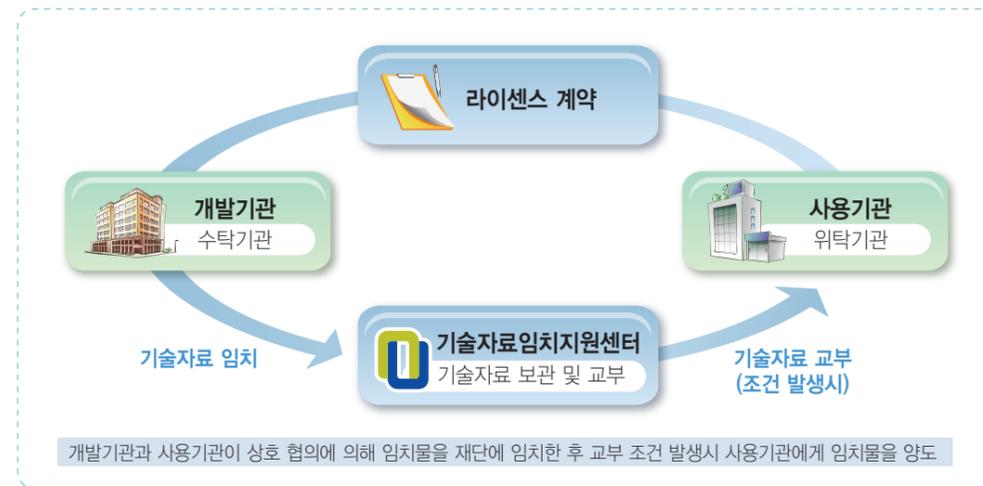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5. 기술자료 임치계약 유형 및 서비스 내용

가. 계약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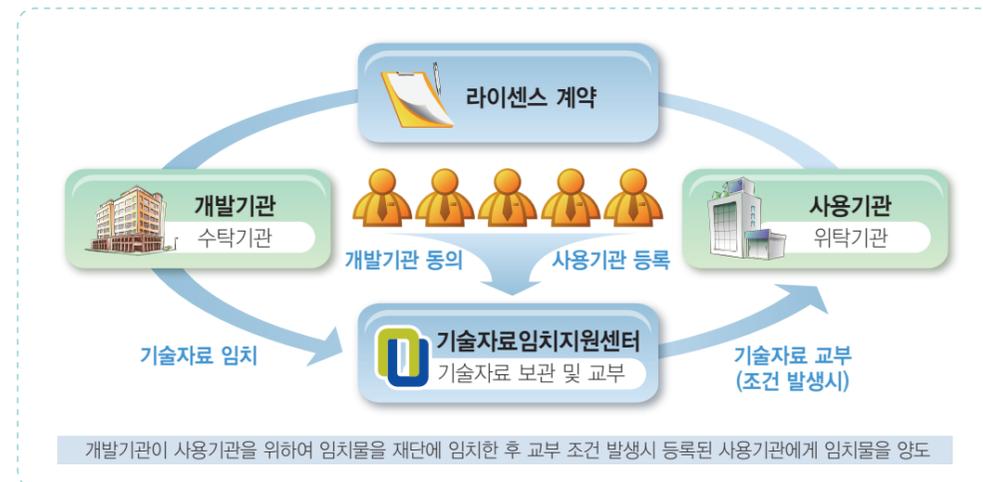
▣ 삼자간 임치계약

- 중소기업이 단일한 대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 다자간 임치계약

- 중소기업이 다수의 대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임치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대기업이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나. 서비스 유형

▣ 일반임치서비스

- 기술자료 임치계약(신규, 갱신)시 계약서 수정사항 검토, 라이선스 관련 법률적 안내, 대응방안, 주요 일정 관리 등을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법률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치계약서 수정사항 검토 기타 계약관련 법률적 자문 | |
| 계약서 검토 및 체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비서류 확인 및 계약당사자 확인 계약 체결(인감날인, 수수료 접수) 임치물 봉인 기술자료 임치증서 발급 | |
|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치계약 갱신 유무 통보 계약당사자 변경(주소, 연락처 등) 관리 계약종료 시 임치물 반환 통보 기타 변경사항(수수료, 기관이전) 등 통보 | |
| 기본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바이러스 등에 의한 임치물의 감염여부 확인 저장매체의 판독여부 및 암호설정 여부 확인 | |
| 교부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 및 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 신청자 확인 교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저작권자 통보 및 확인 임치물 교부 |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 계약 체결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검증임치서비스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자가 임치대상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에 대한 동일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기술 상담 일정 조정 | ○ 기술 분야를 분류하여 해당 전문가 선정 및 기술검증 일정 조율 ○ 수수료 수납 | 일반 임치 서비스 필수 |
| 검증장비 세팅 | ○ 기술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증장비 등을 셋팅 | |
| 결과물 생성 | ○ 검증 시나리오 확인 ○ 임치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생성 * 결과물 미생성 및 임치자료 등의 부족 시 임치물의 추가 임치 요구 | |
| 결과물 확인 | ○ 위탁기업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이상유무 확인 * 신청 당사자간 합의 시 결과물 확인 과정 생략 가능 | |
| 결과물 결과 통보 | ○ 임치물 검증결과 통보 ○ 임치물 봉인 | |

★ 기술검증의 중요성



- 개발기관이 임치물을 준비하는 경우, 핵심기술이 누락될 수도 있고 타 기술이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기술검증을 이용하시면 임치물에 대한 무결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계약편입 서비스 | ○ 개발기관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체결한 다자간 임치계약에 편입하여 임치계약의 사용권자로 등록 | 개발기관 동의 |
| 임치물의 업데이트 (최신본의 임치) | ○ 기술자료 임치계약 후 임치물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개발기관이 최신 임치물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추가적으로 임치 | |

다. 이용절차



6.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현황

가. 국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SW 및 전자·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도 반영('05.9, '05.11, '06.7)
-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
 - ※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 시 과거 3년간 법 위반 점수 누계에서 2점을 감점하고 있음

mke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이 SW를 발주하는 경우,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과 발주 SW에 대한 하자·유지보수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SW 분리발주 가이드 라인에 제도 반영('07.5)
- 수·발주기관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SW기술성 평가항목에 임치제도를 반영('07.12)

DAPI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납품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기술자료 임치제도 반영('09.1)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납품하는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자유롭게 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1)에 제도 반영('06.9)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천재지변,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IT 감사지침에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제도 이용 권고 및 지도·감독

조달청

-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부문 정부 조달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배점한도 : SW개발사업(10점 이내), ITA·ISP사업(5점 이내), 운영유지보수사업(5점 이내)

나. 해외 현황

- 유럽연합·미국·호주 등 선진 각국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이용문화가 일반화되어 기업간 거래 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 Iron-Mountain사(미국)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고객 수 : 45,000기업 이상
- NCC사(영국)도 임치제도 이용 고객이 15,000기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 정부에서도 사용기술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관련 제도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 가 | 활용 내용 | 비 고 |
|--|---|---------------|
|  미 국 | 뉴욕주의 경우 조달계약서에 SW임치제도를 반영하여 SW발주 시 임치제도를 활용 | 조달계약서 제88조 |
|  영 국 | OGC/ OGCbs(영국 조달기관)는 공공구매의 조건에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공공사업의 안전성을 도모 | S-CAT에 반영 |
|  캐나다 | PWGSC(캐나다 조달기관)는 임치제도를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여 활용 | SDMS 매뉴얼 제10조 |
|  호 주 |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가이드를 제정 및 활용 | |

♣ Jon Leigh(NCC사 총괄책임자) 인터뷰('08.11.06)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보험증서'



불안한 IT시장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일종의 보험증서와 같으며, 사용 기업은 개발기업의 폐업 및 재해발생 시 소스코드를 교부받아 해당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개발기업 쪽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례

가. 이용 사례



영업비밀의 새로운 보호모델

전기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L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지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허출원을 하자니 등록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기술이 공개되는 만큼 경쟁회사의 모방 출원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L사는 영업비밀로 해당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만약에 기술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당시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치사실을 통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L사는 자사가 개발한 3건의 기술에 대해 임치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용 솔루션 개발 업체인 W사는 개발된 제품을 국내 주요 은행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W사는 그간 금융권과의 거래 시 해당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거래 상대방인 은행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여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시행 소식을 듣고 개발기업인 W사의 안전한 기술보호는 물론 금융솔루션의 사용자인 은행에게 보험과 같은 효력으로 안전한 사용이라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에 즉시 참여하였습니다.

나. 활용 사례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장장치

O사는 신설기업으로부터 중요한 SW 사용계약을 맺고 나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임치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기업이 파산하였고, O사는 해당 SW의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O사는 임치계약에 의해 임치기관으로부터 임치물을 교부받을 수 있었고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사의 대표이사는 "임치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뻔 했다."라고 임치기관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다양한 활용

S기업은 K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용역을 수주 받은 뒤 개발 업무의 일부를 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사는 개발인력 및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프로젝트의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15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S사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였고, 그 담보로서 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임치기관에 임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S사와 사 및 임치기관은 3자간 임치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8.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 구분 | 유형 | | 수수료 | 비고 |
|--|-----------|-----|----------|--------------------------|
|  기본 서비스 | 신규 | 3자간 | 300,000원 | 최초 기술자료 임치계약 이용시 납부 |
| | | 다자간 | | |
| | 갱신 | 3자간 | 150,000원 | |
| | | 다자간 | | |
|  기술·평가 서비스 | 기술서비스 | | 500,000원 | 바이러스, 가독성 등 기본사항 확인 |
| | 평가 서비스 | | 800,000원 | 해당 기술과 임치물의 동일성 확인 |
|  기타 서비스 | 계약편입 서비스 | | 50,000원 | 다자간 임치계약의 사용권자로 편입 |
| | 임치물의 업데이트 | | 50,000원 | 임치물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최신본을 임치 |
| | 기술평가 | | 300,000원 | 임치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



· 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 오시는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2층)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4번 출구 /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버스 증권거래소 하차

-  261, 461, 753
-  5615, 5623, 5629, 5711, 6623, 6628, 6633, 7613
-  62